

국립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

국립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12월 18일
국립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

I 모집개요

○ 모집규모

| 구분 | 보육실 면적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밭인큐베이터타운(3社) | 43.20㎡, 48.69㎡, 54.22㎡ |
| 대덕산학융합캠퍼스(2社) | 52.63㎡, 82.22㎡ |

※ 보육부담금: [붙임1] 참조

○ 모집기간: 2025. 12. 18.(목) ~ 12. 31.(수)

○ 입주시기: 2026. 2. 1.(예정)

※ 입주계약 체결 시 입주승인 및 국유재산사용 승인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계약 체결

II 신청 및 입주조건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|---|
| 입주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* -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 - 예비창업자(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) |
| 자격 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<p>※입주 제외 대상: [붙임2] 참조</p> |

* 업력은 공고일(2025. 12. 18.)을 기준으로 함

Ⅲ 평가 및 선정

○ 평가방법

- 1차심사: 입주 자격에 대한 적격심사(서류심사)
- 2차심사: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발표평가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)
- 외부 전문 심사위원 3인이 사업계획의 타당성, 기술성, 시장성, 경쟁사 분석, 대학 연계성 등 심사기준에 의한 **대면 심사** 진행
- 각 기업별 심사결과에 따라 보육실 배정 우선순위 지정
-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**평균 60점 이하**의 경우 입주승인 불가

○ 평가항목

| 심사분야 | | 심사내용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계획 | 경영능력 | 전문성, 위기관리 능력, 전담조직 운영 등 |
| 타당성 (30) | 생산기반구축 | 생산설비 확보 가능성, 재료 및 부품 조달 용이성, 노동 생산성 |
| | 수익성 | 영업 및 투자 수익성, 매출 성장 가능성, 마케팅전략 등 |
| 기술성 (30) | 우수성 | 차별성, 기술의 수명주기, 모방 용이성, 기술의 완성도 |
| | 경쟁성 | 대체기술 출현 가능성, 파급효과 |
| | 권리성 | 권리의 확보 가능성 및 이전 가능성, 권리의 범위 |
| 시장성 (20) | 시장특성 | 시장구조 및 선호도, 법적 규제 등의 제약, 시장의 성장 가능성 |
| | 경쟁성 | 시장진입 가능성, 대체품과의 우위성, 기업간의 경쟁강도 |
| 국내·외 경쟁사분석(10) | | 경쟁 기술, 대체기술에 대한 분석 |
| 대학 연계성(10) | | 창업보육사업의 적합성, 대학 연계 가능성, 졸업생 채용 가능성 |
| [가점] 우대 사항* | 항목당 5점 | 정부출연연구기관·연구원 창업기업 |
| | | 지역 내 사내벤처 창업기업 |
| | 항목당 3점 | 본교 교수 (예비)창업자 |
| | | 본교 대학(원)생 (예비)창업자 |
| | 항목당 1점 (최대 3점) | 제대군인 (예비)창업자 |
| | | 장애인기업 |
| 여성기업 | | |
| | |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(예비)창업자 |

* 본 우대사항 기준은 「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」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며,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

○ 입주 선정기준

-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에 따라 입주 선정

IV 추진일정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홍보 | 2025. 12. 18.(목) ~ 12. 31.(수) |
| ↓ | |
| 입주신청서 접수 | 2025. 12. 18.(목) ~ 12. 31.(수) |
| ↓ | |
| 1차 심사(서류심사) | 2026. 1. 5.(월) ~ 1. 7.(수) |
| ↓ | |
| 2차 심사(발표심사) | 2026. 1. 12.(월) ~ 1. 14.(수)(中 1일) |
| ↓ | |
| 입주승인 대상자 선정 및 공간 배정 | 2026. 1. 15.(목) ~ 1. 16.(금) |
| ↓ | |
| 최종 입주승인 통보 | 2026. 1. 19.(월) |
| ↓ | |
| 입주계약 체결 | 최종 입주 승인 통보 후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계약 체결 |

※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V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- 신청기간: 2025. 12. 18.(목) ~ 12. 31.(수)
- 접수방법: 국립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류 메일 제출(lsh0408@hanbat.ac.kr)

※ 신청서류

-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작성서식: 첨부파일 참고)
- ② 신용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활용 동의서
-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(예비창업자에 한함)
- ④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- ⑤ 법인 등기부등본(해당자에 한함)
- ⑥ 최근년도 재무제표(해당자에 한함)
-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⑧ 창업기업 확인서
- ⑨ 각종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(가점 관련사항, 지식재산권, 기업 인증서, 정부지원사업 수주 현황 등)
- ⑩ 발표자료(PPT 또는 PDF)(10분 발표분량으로 제작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1일 전까지 제출)

※ 허위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VI 문의처

- 주관부서: 국립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
- 문의처: 042-821-1696~8

붙임 1

국립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보육부담금

| 구 분 | 산 출 내 역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유재산사용료 | 대학 관리팀의 비용 산정에 의해 고지 후 징수 | | 년 1회 |
| 화재보험료 | | | |
| 보육예치금 | 입주 시 보육비 6개월분 | | 입주 시 납부 졸업·퇴거 시 반환 |
| 보 육 비 (원/㎡/월) (전용면적 기준) | 한밭인큐베이터타운 | 1년차 : 5,400원 2년차 : 6,100원 3년차 : 6,700원 4년차 : 7,600원 5년차 : 9,100원 6년차 이상 : 10,600원 | 매월 (공동관리비 포함, VAT 별도) |
| | 대덕산학융합캠퍼스/ 지역협력관 | 1~3년차 : 7,600원 4~5년차 : 9,100원 6년차 이상 : 10,600원 | |
| 공공요금 | 전기, 수도 등 실비부과 | | 매월 |

※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에 따라 별도로 국유재산사용료를 징수하며,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(사용료의 납부시기 등)의 사용료 선납 기준이 적용됨으로 보육실 사용 시작하기 전에 동 사용료를 선납한 대상으로 한정하여 입주계약 체결

- ① 숙박 및 음식점업(55)
- ② 금융 및 보험업(65~67)
- ③ 부동산업(70)
- ④ 무도장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
- ⑤ 기타 서비스업(93)
-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
-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
 - 40~41 전기, 가스 및 증기업, 수도사업
 -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
 - 51~52 도매 및 상품중개업, 소매업
 - 60~6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, 수상 및 항공운송업
 - 63 여행알선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
 - 74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
(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에 한한다.)
 - 75 사업지원서비스업(탐정, 경비, 인력공급업 등)
 - 76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 - 80 교육서비스업
 - 85~86 보건업, 사회복지사업
 - 88 기타 오락,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
 - 90 하수처리,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
 - 91 회원단체
 - 92 수립업
 - 95 가사서비스업
 - 99 국제 및 외국기관

가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(동법 시행령 제4조)의 중소기업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자

나.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

다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
라.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

마.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

바.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 자